

대부분은 대기업과 Tablet PC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 산업계(vertical industries)가 될 것이다.

2003년 중 업무용 휴대형PC의 주요 경향의 또다른 하나는 무선 랜 기술의 채용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항, 호텔, 컨퍼런스센터 등에 802.11가 확산되면서 사용자들이 무선 LAN의 속도와 편리성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PC업체들이 무선 휴대형PC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공공 무선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막대한 투자와 제휴를 하고 있다. 무선 인프라 환경의 구축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부터 노트북 신규 구매시 802.11b 인터페이스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내부에 무선 LANs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공공 무선 인프라의 확충은 무선 근로자의 생산성을 재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노트북의 사용주기인 3년 내에 802.11를 수용하게 되어 2005년에 가서는 업무용 노트북의 80%가 802.11인터페이스를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휴대형 PC에서 DVD 탑재 경향이 점차 확산될 것이다. 대용량의 저장장치라는 장점으로 인해 DVD의 채용이 데스크탑PC에도 채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2004년 중반에 가서는 업무용 노트북에서도 DVD 및 CD-RW 콤보 드라이브가 노트북의 CD-RW드라이브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512MB DDR RAM이 대기업 노트북의 표준사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1] Gartner Dataquest, "Worldwide and U.S. PC Forecast," 2002. 3.
- [2] _____, "Notebook Market Predictions, 2003," 2002. 11. 4
- [3] CNET, "Intel's Banias: Not built for speed," 2002. 8. 7

미국 장애인법, 인터넷공간에의 적용 불가 판결의 의의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주임연구원 오태원
(T. 570-4142, clover@kisdi.re.kr)

1.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지난 10월 18일 남부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의 패트리샤 시즈판사는 시각장애인인 로버트 겐슨과 ACCESS NOW, INC.(비영리 법인)가 SOUTHWEST AIRLINE, C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공사가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판

결하였다. 시즈판사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Southwest.com>)는 ADA가 정의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거리가 멀다”며 “현행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웹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ADA는 1990년에 제정된 법률로, 모든 공공편의공간(place of public accommodation)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가능(accessible)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호텔, 레스토랑, 쇼핑센터, 대학 등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항공사의 웹사이트는 공공편의 공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즈판사는 “장애인법의 입법자도 이 법이 적용되는 물리적 공간의 종류를 매우 조심스럽게 열거하였으며, 이 법이 인터넷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였으며, “장애인법을 가상공간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정의된 기준없이 새로운 권리를 창조하게 된다”면서 장애인법을 사이버공간으로 확대하는 데는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여운을 남겼다.

2. 양측의 반응

검사와 시민단체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번 판결이 지난 1997년 Web Accessibility Initiative(WAI)를 발표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속을 지원해온 World Wide Web Consortium(W3C) 등 정보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W3C는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근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웹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 갱신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기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조계의 배려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계 관계자들은 “장애인법은 열악한 상황에 빠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공간이 장애인들에게 열악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3. 의의와 시사점

이 판결이 주는 우선적 의미는 사이버공간이 아직까지 물리적 공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공간으로써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과 동일하게 장애인을 위한 설계, 시설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지 장애인이라는 잠재적 수요자, 접근성 높은 웹사이트의 경쟁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9년 미 시각장애인연맹은 온라인 업체인 AOL을 상대로 AOL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AOL이 이를 인정하고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다시

프로그래밍하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확보가 형벌 또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되기는 어렵겠지만, 접근성 자체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2002년 1월 제정, 고시하였으며,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이 창립되었다. 물론 이 권장지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권장지침 제정당시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의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적 강제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시기상조라고 결론을 맺긴 하였지만 접근성 향상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며,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즈 판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Judge: Disabilities Act doesn't cover Web", CNET.com Tech News, 2002. 10. 21, <http://news.com.com/2100-1023-962761.html>
- [2] Robert Gumson & ACCESS NOW, INC. vs. SOUTHWEST AIRLINE, CO.의 판결문 <http://www.flsd.uscourts.gov/viewer/viewer.asp?file=/cases/opinions/02CV21734d24.pdf>

UNE-Platform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오기석
(T. 570 - 4243, ksoh@kisdi.re.kr)

1. 개 요

1996년 개정 미 통신법은 시내전화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ILEC의 통신망을 세분화하여 망요소별로 신규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망세분화(UNE: Unbundled Network Element) 규정을 도입하였다.

현재, CLEC가 시내전화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설비 자체구축, 재판매와 위에서 언급한 망세분화 등 3가지가 있다. '99년 이후 설비 자체구축, 재판매를 통한 시장진입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세분화된 망요소를 이용한 방식, 특히 UNE-Platform을